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2. 1.(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2. 15.

나. 제 안 자 : 김국환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2. 16.

라. 상정일자 : 제268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년 2월 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 대상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거 형사처벌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함. (안 제5조의2)

○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2월 1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위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수는 물론 위원수, 회의 개최횟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청렴도 제고 방안은 필요함.

○ 안 제5조의2는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청렴서약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안 제5조의2에 제출 시기를 추가하고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호와 시민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1호] 서식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제6호는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위원회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고동환 행정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다만, 서약서 제출에 대해 위원들이 일부 꺼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잘 설득하도록 하겠음.

(질문) (이오상 의원) 별지1호 서식 일부 내용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 등 관련 본인 확인내용을 완화하여 타 시·도교육청 같은 수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답변) (고동환 행정국장)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청렴서약서 제출 시기 및 공무상 취득 정보누설 금지 추가 필요

○ 시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골자

○ 청렴서약서 제출 시기 및 공무상 취득 정보누설 금지 추가 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일부 완화적용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 위촉(임명)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 또한,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과거 아래 사항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5.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수 정 안
-	제5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형사처벌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위원 위촉(임명)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 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 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 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개정안과 같음) ○ ---------- ---------- ---------- ---------- ---------- 심의 과정에서 (추가) 취득한 정보 의 누설 금지, 금품, 향응이나--- ----------. <삭제>

	○ 또한,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과거 아래 사항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5.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별지2호 서식]** (공무원 위원용)	**(개정안과 같음)**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 위촉(임명)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